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9.29. 공포, '20.12.30. 시행 예정)으로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마련,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가 지자체장까지 확대된 사항과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함)의 구축·운영 등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자 및 방역관 임명권자에 지자체장이 포함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7조의4, 별지 제18호의5 서식, 제30호의3 서식)
- 나.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세부절차 등 신설(안 제31조의5)
- 다.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 별표10 서식)
- 라. 조항 이동 사항 반영 및 미비점 보완(안 제31조의6, 별표11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1호의2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1항 중 “질병관리청장”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4조의2제2항”을 “법 제34조의2제3항”으로, “질병관리청장”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1조의5를 제31조의6으로 하고,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40조의 5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자료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감염병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 내용을 감염병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입력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감염병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정보시스템에 관한 세

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표 10”을 “별표 11”로 한다.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10과 같다. 별표 10을 별표 11로 하고, 별표 11(중전 별표 10)의 제목 중 “(제42조 관련)”을 “(제42조제2항 관련)”으로 하며,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의5서식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하단 중 “질병관리청장”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질병관리청”을 “질병관리청,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하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기관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중 “시행규칙 제31조의5”를 “시행규칙 제31조의6”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3서식 하단 중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중 “시행령 제32조제1항”을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시행령 제34조제1항”을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u>질병관리청장</u> 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u>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u> ----- ----- ----- -----.
② <u>법 제34조의2제2항</u> 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u>질병관리청장</u>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u>법 제34조의2제3항</u> ----- ----- ----- ----- <u>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
<u><신 설></u>	<u>제31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u> ① <u>법 제40조의5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자료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감염병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u>

	<u>처리 내용을 감염병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u> <u>② 법 제40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입력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감염병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u> <u>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정보시스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u>
<u>제31조의5</u> (생략)	<u>제31조의6</u> (현행 제31조의5와 같음)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u><신설></u>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u>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10과 같다.</u>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u>별표 10</u> 과 같다.	② ----- ----- <u>별표 11</u> -----.

행정처분기준(제42조제1항 관련)

I.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가장 중한 행정처분기준에 나머지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1에 따라 처분한다.
3.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같은 날 동일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5.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 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6. 최근 2년 동안 3차의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운영정지처분을 하고, 3개월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처분을 한다.
7.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 행위가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관리자·운영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8. 운영중단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 또는 가중처분하려는 경우 그 운

영중단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9.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II.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2차	3차
1.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3항			
가. 소독, 환기 등 시설관리 관련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나.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이용자관리 관련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 입원 · [] 격리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입원/격리 사유			
입원/격리 내용	입원일 / 격리 시행일		
	입원기간 / 격리기간		
	입원/격리 장소	☐ 병원() ☐ 자택 ☐ 시설()	
		주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